



제42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체포·구속 피의자 수사기관 출석 거부 시  
구치소장 등에게 인치 의뢰 〉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951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용기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5. 8. 4.
3. 회 부 일 : 2025. 8. 5.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내란죄 등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특별 검사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며 수사를 지연시키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이처럼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음. 이에 판례는 대법원 2013. 7. 1.자 2013도160 결정을 통해 구속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어 여전히 실무와 학설에서의 혼란이 이어지는 실정임.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형사소송법」과 달리, 독일은 법원뿐 아니라 수사기관인 검사가 피의자신문을 할 때에도 피의자에게 출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독일 형사소송법 제163조의a 제1항 제1문, 동법 제163조의a 제3항, 제133조 제2항, 제134조 제2항), 일본 역시 체포·구류된 피의자의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 중에 퇴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일본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따라서 우리 「형사소송법」 역시 체포·구속 피의자의 출석의무와 그를 위반한 경우의 구인체계를 법률상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인치를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권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200조, 제200조의2).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교도소장·구치소장에게 피의자의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교도소장·구치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 신·구조문대비표 ]

| 현행                                                                                                                                                | 개정안                                                                                                                                            |
|---------------------------------------------------------------------------------------------------------------------------------------------------|------------------------------------------------------------------------------------------------------------------------------------------------|
|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생략)                                                                                                                             |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 <신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인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第200條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被疑者が罪を犯하였다고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逮 | 第200條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br>-----<br>-----<br>----제200조제1항-----<br>-----<br>-----<br>-----<br>-----                                           |



신문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sup>4)</sup> 이로 인해 수사를 통해 국가적 법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나아가 국가 존립을 위한 형벌권을 실현하려는 목적이 과도하게 제한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이에 개정안은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구치소장 등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구치소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신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구치소장 등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를 인치하여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인정될 수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 헌법상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체포·구속영장의 효력이 구치소에 구금된 피의자를 수사기관으로 인치하는 것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예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

4) 연합뉴스, “공수처, ‘조사불응’ 尹대통령 조사실로 강제구인 시도 중”, 2025. 1. 20., 연합뉴스TV, “특검, 尹 체포영장 집행 실패…”완강히 거부”, 2025. 8. 1., KBS, “尹 체포영장 재집행 무산…“완강한 거부로 부상 우려””, 2025. 8. 7. 등

있음.<sup>5)</sup> 이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의 효력을 바탕으로 사실상 강제처분과 유사하게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수사기관이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피의자의 인치를 구치소장 등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반면,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구속피의자 등에게 ‘임의 수사’에 해당하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영장의 효력은 도주를 방지하여 피의자의 공판정 출석 및 형 집행을 담보하고 증거인멸 등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강제 인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sup>6)</sup>도 제기되고 있는바, 심사 시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              |
|--------------|
| 문 의 처        |
| 02)6788-5048 |

5) 2013. 7. 1. 결정 2013모160. 다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그 피의자신문 절차는 어디까지나 법 제199조제1항 본문, 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의자는 헌법 제12조제2항과 법 제244조의3에 따라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그와 같은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여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이며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여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6) 조기영, “구속피의자의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의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통권 제42집, 2014. 9. p83